

제 호

기반시설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

청구인	성명(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(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)	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	
심사 결정의 내용	부과 대상 건축물		
	구분	예정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	고지 전 심사의 결과
	설치비용액		
	이유		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제4항·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고지 전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

직인